

커뮤니케이션·미디어연구소 규정

2006. 1. 19 제정

2014. 9. 26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·미디어연구소 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에 둔다. (개정 2014.9.26.)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언론정보·방송영상·광고홍보 분야 연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과 전문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조사 및 프로젝트 사업
2. 출판사업
3. 영상콘텐츠 제작
4. 교육사업
5. 여성미디어전문직 Fellowship 운영
6. 학술교류프로그램
7. 국제교류프로그램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소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저널리즘 연구실, 디지털 미디어법제정책연구실, 광고마케팅연구실,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실, 디지털 미디어 영상문화연구실, 디지털 미디어 제작연구실, 미디어교육연구실을 둔다.

②저널리즘 연구실은 언론저널리즘 관련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디지털 미디어법제정책연구실은 미디어법제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광고마케팅연구실은 광고마케팅 관련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실은 PR커뮤니케이션전략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디지털 미디어 영상문화연구실은 방송영상문화 관련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⑦디지털 미디어 제작연구실은 디지털 미디어 영상제작 관련 연구 및 사업에 관한

업무를 담당한다.

⑧ 미디어교육연구실은 미디어 교육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6 조 (실장) ①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9.26.)

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9.26.)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사회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8 조 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·미디어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외부지원금, 기타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4.9.26.)

부 칙(2006. 1. 19 제정)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9. 26 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